

# 식·음료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송 성 완 과장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 I. 배 경

국내산업은 '97년 이후 외환위기와 함께 기업의 연쇄도산 및 대량의 실업사태 등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경우 생산지수가 '96년 4.8%에서 '97년-1.4%, '98년-9.8%로 급격히 악화되어 조업중단 및 생산품목수를 줄이는 위기를 겪고 있다.

식품산업의 연도별 생산지수 현황

| 구 분    | '95 | '96 | '97  | '98  |
|--------|-----|-----|------|------|
| 연평균(%) | 6.0 | 4.8 | -1.4 | -9.4 |

자료 : '99년 4월 통계청

이에 대응하여 식품업계에서는 경영 각 부분에 걸쳐 비용경감, 구조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세정책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식품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은 물론 수질오염방지, 국민건강증진 및 식생활문화의 개선 등 타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식품업계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초래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특별소비세의 개선은 식품산업의 발전에 중

요하고도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정부정책에서 보듯이 IMF 위기상황에서 붕괴된 중산층의 복원과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세율등을 인하하는 조세정책도 바람직하지만 식·음료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 및 경감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II. 식·음료업계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의 문제점

### 1. 현 황

특별소비세의 입법취지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사치성 물품의 소비급증으로 야기될 국민경제의 불건전한 요인을 세계 측면에서 조정·통제하고, 부가가치세 세율구조의 단순화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여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소비물품에 대하여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의 소비대상에는 중과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1977년 제정되었다.

과세표준은 국내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과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은 판매장의 판매가격(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판매비용 + 이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식

품의 경우는 수입신고가격(CIF)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식·음료품의 과세대상 및 세율은 아래표와 같다.

### 과세대상 및 세율

| 종 별 | 품 목     | 세율(%) | 비 고   |
|-----|---------|-------|---|
| 제2종 | 커피와 코코아 | 15    | ※ 과세물품의 세율<br>: 물품가격의 100분의 15~<br>100분의 10 |
| 제3종 | 청량음료    | 10    |   |
|     | 기호음료    | 10    |   |
|     | 자양강장품   | 10    |   |
|     | 사탕      | 10    |   |

## 2. 연도별 특별소비세 부과현황

내국세 중 특별소비세의 구성비는 연평균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94년의 경우 식·음료품의 특별소비세 구성비가 8.2%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휘발유, 경유가 교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소비세 액이 28.2%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7년 내국세에서 식·음료품의 특별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특별소비세 부과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94     |     | '95     |     | '96     |     | '97     |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내국세  | 384,490 | 100 | 443,820 | 100 | 492,023 | 100 | 521,531 | 100 |
| 특소세  | 24,256  | 6.3 | 26,171  | 5.9 | 31,193  | 6.3 | 31,440  | 6.0 |
| 식·음료 | 2,004   | 0.5 | 1,970   | 0.4 | 1,976   | 0.4 | 2,150   | 0.4 |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국세청

한편, 특별소비세 중 식·음료품의 비중은 '97년 청량음료, 커피가 2.3%, 1.5%로 나타났으며, 코코

아, 사탕등은 0.3~1.3%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음료품의 특별소비세 비중

(단위 : 억원, %)

| 구 분     | '94    |      | '95    |      | '96    |      | '97    |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특별소비세   | 24,256 | 100  | 26,171 | 100  | 31,193 | 100  | 31,440 | 100  |
| 식·음료계   | 2,004  | 8.2  | 1,970  | 7.5  | 1,976  | 6.3  | 2,150  | 6.8  |
| 제2종     |        |      |        |      |        |      |        |      |
| - 커피    | 463    | 1.9  | 450    | 1.7  | 430    | 1.4  | 486    | 1.5  |
| - 코코아   | 57     | 0.2  | 58     | 0.2  | 80     | 0.3  | 104    | 0.3  |
| 제3종     |        |      |        |      |        |      |        |      |
| - 사탕    | 330    | 1.4  | 363    | 1.4  | 373    | 1.2  | 400    | 1.3  |
| - 청량음료  | 609    | 2.5  | 638    | 2.4  | 721    | 2.3  | 730    | 2.3  |
| - 기호음료  | 246    | 1.0  | 132    | 0.5  | 101    | 0.3  | 130    | 0.4  |
| - 자양강장품 | 293    | 1.2  | 329    | 1.3  | 272    | 0.9  | 300    | 1.0  |
| 기 타 계   | 22,252 | 91.7 | 24,201 | 92.5 | 29,217 | 93.7 | 29,290 | 93.2 |

자료 : 국제통계년보, 각년도, 국제청

### 3. 문제점

#### 가. 입법취지에 상충

커피·청량음료 등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식·음료품은 특별소비세법 제정당시의 경제환경 하에서는 일부계층만이 소비가 가능했었으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청량음료, 커피 등은 이미 국민식생활의 기호식품이자 대중소비제품화 되었다. 특히 커피, 청량음료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와는 정면으로 상충된다.

과세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고가의 수입대리석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고급시계, 모피제품, 카펫 등은 1백만원 이상만 과세하는 것은 유청소년들이 주로 소비하는 청량음료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과세표준상의 상이

WTO체제하의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있어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식품과의 과세표준의 차이는 국내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내가공식품의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과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제조원가+판매비용+일반관리비+이윤)으로서 국내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지사 및 지점을 통한 판매방식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판매장의 판매가격인 반면 수입식품은 보세구역 반출가격(수입신고가격(CIF)+관세)으로서 수입판매자의 판매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입식품의 경우는 이와 같은 세금차액을 광고, 판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세금차액만큼 가격을 인하하여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다. 탄력세를 적용대상 품목의 형평성

정부에서는 IMF 체제하의 침체된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98년 8월 1일부터 '99년 7월 30일 까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값비싼 내구재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특별소비세 부과물품 중 가장 저렴하고 가장 대중소비 식품화 된 청량음료, 커피 등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국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원칙과는 배치되며, 미국과 같이 고급자동차 등 고가 사치품목에 대해 초과금액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에도 대중소비재품인 청량음료, 커피 등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하물며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조차 제외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조세정책임을 알 수 있다.

#### 라. 세법운영상 불합리

국내의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개발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사치성 제품에 대해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모든 계층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음료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안정적인 세원만 확보하려는 것은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의 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단일비례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부분적이나마 완화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수입대리석 등 고가의 사치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이미 대중 소비재품인 식·음료품에는 여전히 특별소비세가 부과됨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기능을 완화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으며, 식·음료품의 1인당 소비량이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서 보더라도 계층간 소득개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아지는 조세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어 조세정책의 가장 기본인 공평성 및 형평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 Ⅲ.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문제의 계량적 분석

#### 1. 계층별 소비세 부담 분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소비세의 세부담 분포는 중산층 이하(1~6분위)에서 비례적이며, 고소득층(7~10분위)에서는 다소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승용차 제외), 주세, 전화세, 담배소비세는 역진성이 크며, 교통세, 교육세는 누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994년 기준). 소비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특별소비세에서 승용차를 제외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많은 세를 부담하여 특별 소비세의 근본취지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세 과세를 감안하여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변화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소득분포의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값은 1994년 당시 증가하였고, 따라서 세부담의 역진성이 소비세로 강화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승용차를 제외하면 특별소비세 등에서 지니계수의 값이 과세 이전에 비해 증대하여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층별 소비세목별 세부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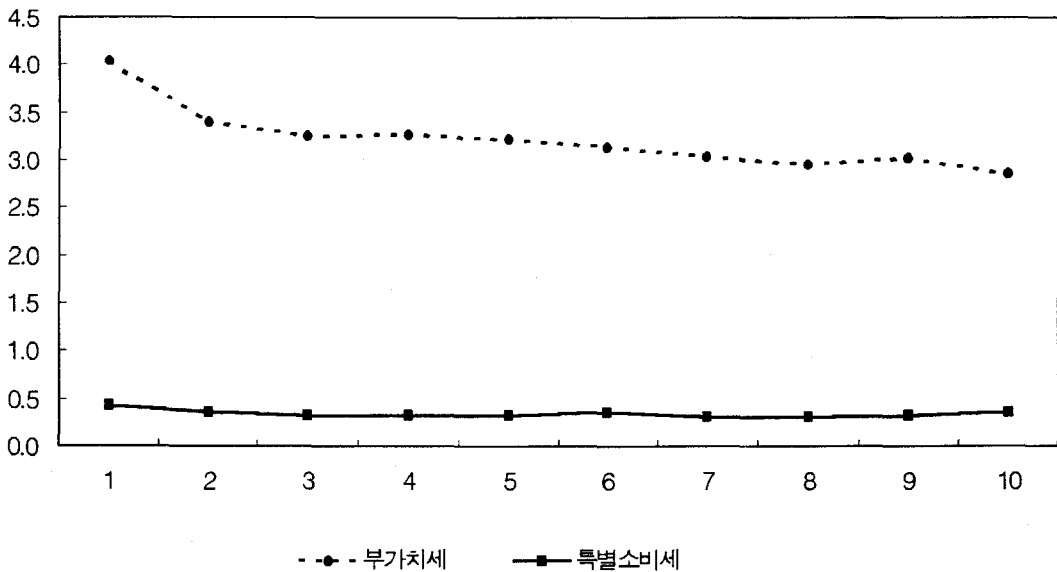
(단위: %)

| 소득분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평균    |
|-------------------|-------|-------|-------|-------|-------|-------|-------|-------|-------|-------|-------|
| 부가가치세             | 4.037 | 3.399 | 3.241 | 3.260 | 3.219 | 3.127 | 3.040 | 2.957 | 3.012 | 2.854 | 3.091 |
| 특별소비세<br>(승용차제외)  | 0.432 | 0.356 | 0.331 | 0.322 | 0.328 | 0.367 | 0.314 | 0.308 | 0.337 | 0.359 | 0.340 |
| 주세                | 0.343 | 0.342 | 0.329 | 0.315 | 0.300 | 0.299 | 0.260 | 0.240 | 0.247 | 0.221 | 0.270 |
| 교통세               | 0.492 | 0.720 | 0.632 | 0.819 | 0.922 | 0.937 | 0.927 | 1.134 | 1.147 | 1.130 | 0.976 |
| 교육세<br>(승용차제외)    | 0.214 | 0.157 | 0.166 | 0.182 | 0.182 | 0.244 | 0.201 | 0.243 | 0.253 | 0.227 | 0.216 |
| 특소세교육세<br>(승용차제외) | 0.146 | 0.135 | 0.130 | 0.129 | 0.130 | 0.197 | 0.122 | 0.162 | 0.137 | 0.144 | 0.144 |
| 특소세교육세<br>(승용차제외) | 0.150 | 0.093 | 0.104 | 0.121 | 0.123 | 0.182 | 0.150 | 0.192 | 0.199 | 0.177 | 0.161 |
| 주세교육세             | 0.083 | 0.071 | 0.068 | 0.068 | 0.071 | 0.136 | 0.071 | 0.112 | 0.083 | 0.094 | 0.089 |
| 담배소비세             | 0.064 | 0.064 | 0.063 | 0.061 | 0.058 | 0.062 | 0.051 | 0.050 | 0.054 | 0.051 | 0.056 |
| 소비세 계             | 0.543 | 0.455 | 0.429 | 0.380 | 0.332 | 0.341 | 0.301 | 0.254 | 0.225 | 0.187 | 0.297 |
| 소비세 계             | 6.524 | 5.673 | 5.399 | 5.588 | 5.578 | 5.576 | 5.406 | 5.495 | 5.695 | 5.324 | 5.537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재정금융연구, 1996.

[그림 1] 계층별 소비세목별 세부담율

(단위: %)



## 소득계층별 역진도 지수

(단위:  $\times 10^{-2}$ )

| 구 분                | 지니 계수 (총소득 기준) |           |
|--------------------|----------------|-----------|
| 소 비 세 전            | 27.2481        |           |
| 소 비 세 후            | 27.4353        | (-0.1872) |
| 부가가치세 후            | 27.3814        | (-0.1332) |
| 특별소비세 후<br>(승용차제외) | 27.2519        | (-0.0038) |
| 주 세 후              | 27.2709        | (-0.0227) |
| 교 통 세 후            | 27.1620        | (0.0861)  |
| 교 육 세 후<br>(승용차제외) | 27.2497        | (-0.0016) |
| (특소세분)             | 27.2472        | (0.0010)  |
| (주세분)              | 27.2507        | (-0.0025) |
| 담 배 소 비 세          | 27.3005        | (-0.0524) |

주: ( ) 안은 소비세 전 지니계수로부터 세후 지니계수를 차감한 것으로서, 그 값이 양수이면 계층별 세부담이 누진적이고, 음수이면 역진적인 것을 나타냄.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재정금융연구, 1996.

### 2. 소비품목별 소비세 부담 분포

한국조세연구원의 1994년 도시가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설탕, 커피, 탄산음료 등 식·음료품에 관한 세부담은 매우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력세율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칼라TV 등 가전제품의 경우 소형제품은 역진적인 반면 대형제품은 누진적이고, 승용차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누진적이며 소형보다는 중형의 경우가 더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94년 자료를 보더라도 음·식료품은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주류보다 더 대중적인 소비재로서 역진성이 매우 크며, 금년에 학계와 언론에서 많이 논의된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악화되었고 얼마전 강봉균 재경부 장관님(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께서도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형평성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등 1994년보다도 국민의 세 부담의 구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생각할 때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개선은 시급한 실정이다.

### 주요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실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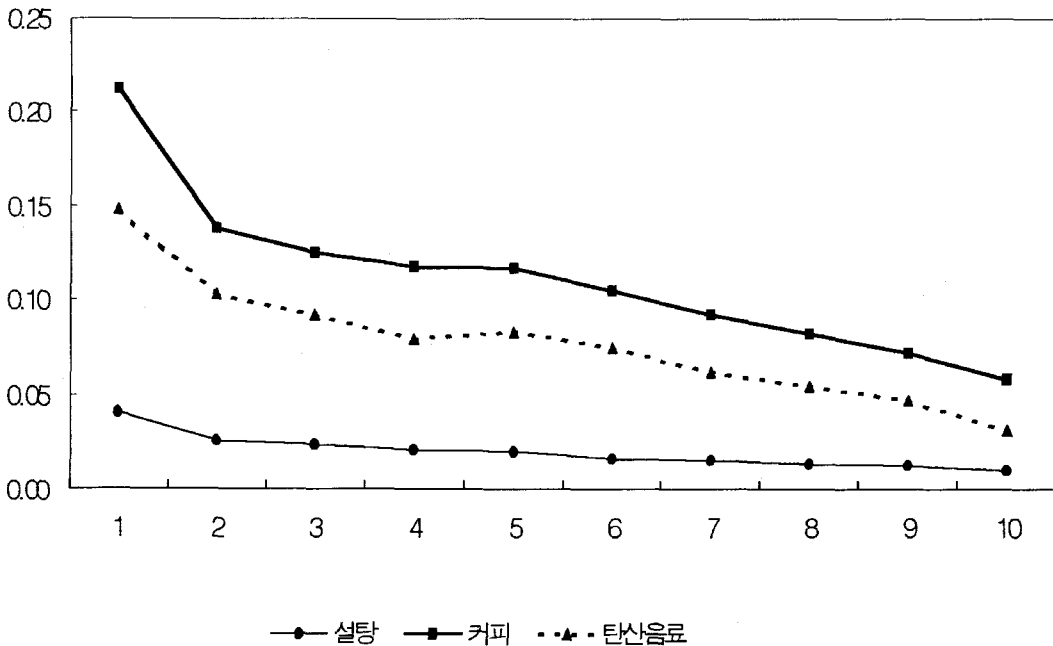
(단위:%)

| 소득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평균    |
|------|-------|-------|-------|-------|-------|-------|-------|--------|--------|--------|-------|
| 설탕   | 0.040 | 0.026 | 0.024 | 0.021 | 0.020 | 0.017 | 0.016 | 0.014  | 0.013  | 0.010  | 0.017 |
| 커피   | 0.212 | 0.138 | 0.125 | 0.118 | 0.117 | 0.105 | 0.092 | 0.082  | 0.072  | 0.058  | 0.094 |
| 탄산음료 | 0.148 | 0.103 | 0.092 | 0.079 | 0.083 | 0.074 | 0.062 | 0.054  | 0.047  | 0.031  | 0.063 |
| 냉장고  | 0.319 | 0.401 | 0.313 | 0.294 | 0.402 | 0.415 | 0.307 | 0.255  | 0.198  | 0.440  | 0.336 |
| 컬라TV | 0.263 | 0.272 | 0.183 | 0.227 | 0.262 | 0.216 | 0.275 | 0.194  | 0.298  | 0.275  | 0.251 |
| 승용차  | 2.245 | 0.738 | 1.208 | 1.766 | 1.735 | 1.547 | 2.633 | 2.691  | 3.861  | 2.769  | 2.397 |
| 소주   | 0.315 | 0.183 | 0.145 | 0.127 | 0.131 | 0.125 | 0.110 | 0.100  | 0.082  | 0.063  | 0.112 |
| 맥주   | 0.920 | 0.802 | 0.813 | 0.770 | 0.636 | 0.646 | 0.577 | 0.564  | 0.455  | 0.364  | 0.577 |
| 휘발유  | 4.624 | 6.967 | 6.102 | 8.014 | 9.032 | 9.189 | 9.114 | 11.227 | 11.358 | 11.175 | 9.604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재정금융연구, 1996.

[그림 2] 주요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실효세율

(단위: %)



주요소비품목의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부담에 대한 역진도 지수

(단위 :  $\times 10^{-2}$ )

| 구 분      | 지니 계수(총소득 기준)     |
|----------|-------------------|
| 소비세 과세전  | 27.2481           |
| 개별품목 과세후 |                   |
| 설 탕      | 27.2485 (-0.0004) |
| 커피       | 27.2498 (-0.0017) |
| 탄산음료     | 27.2495 (-0.0014) |
| 냉장고      | 27.2485 (-0.0004) |
| 칼라TV     | 27.2476 (0.0005)  |
| 승용차      | 27.2227 (0.0254)  |
| 소 주      | 27.2506 (-0.0025) |
| 맥 주      | 27.2568 (-0.0087) |
| 휘발유      | 27.1597 (0.0884)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도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재정금융연구,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량음료, 커피 등 음·식료품의 경우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도 있었으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국민소비 형태의 변화로 이제 대중소비식품화 되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의 대상품목 및 세율이 과세목적에 합당하게 조정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고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폐지가 시급한 실정이나 정부의 세수연건상 비과세가 당장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IV. 특별소비세 개선방향

1. 식·음료품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30% 적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중에서 커피, 청량음료 등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 조세정책상 당장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수 없다면, 소비자의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식·음료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식·음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부가 가치세의 역진성 보완기능을 상실하였으며, 22년전, 제정당시와 달리 식·음료품은 이미 대중소비식품화 되었으며, 탄력세율 적용시 소득계층간 소득 재분배 및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국내 식품산업의 활성화로 세수보전 및 식품완제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경상수지흑자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서민층과 청소년층에서 즐겨 음용하는 특수세 부과대상 식·음료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업계에서는 소비자 가격인하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제한된 소비계층의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조세정책을 통한 중산층 보호라는 취지외에도 향후 식·음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식·음료품의 경우 서구화된 음식문화에 익숙해진 청소년과 어린이 소비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식·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담의 부당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1999년 5월 6일, MBC경제매거진 10:30 p.m. 보도자료등 참조)



### 청량음료 소비량 국가별 비교(98년 기준)

|           |      |      |      |      |     |
|-----------|------|------|------|------|-----|
| 국 가       | 멕시코  | 미국   | 일본   | 필리핀  | 한국  |
| 1인당 연간소비량 | 412병 | 395병 | 149병 | 142병 | 62병 |

#### 탄력세율 적용 예시

| 종 별         | '99 현행세율 | 탄력세율 적용세율 |
|-------------|----------|-----------|
| 제2종 커피와 코코아 | 15 %     | 10.5%     |
| 제3종 청량음료    | 10 %     | 7 %       |
| 기호음료        | 10 %     | 7 %       |
| 사 탕         | 10 %     | 7 %       |

## 2. 국내 식·음료품과 수입식품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조정

수입 식·음료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수입가액+관세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국내생산 식·음료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제조원가+일반관리비+판매비용+이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식·음료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식품의 수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공평한 과세표준과 식·음료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식·음료품의 과세표준을 종량세나 제조총원가(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판매비)+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과세표준 비교 예시(냉동건조커피 원/kg기준)

(단위 : 원)

| 구 분   | 국내제품   | 수입제품   | 차 이   |
|-------|--------|--------|-------|
| 과세표준  | 27,053 | 18,093 |       |
| 특별소비세 | 4,058  | 2,714  | 1,344 |

## V. 국민경제에 대한 식·음료산업의 역할

### 1. 국민경제의 고용창출 및 외자유치

식·음료산업은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으로 인해 고용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현재 약 19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현황을 살펴볼 때에도 전체 제조업 중에서 전기·전자, 제지·목재다음으로 외화를 많이 유치하여 IMF 외환위기 전후인 '97~'99년 16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유치하여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 식·음료품제조업의 월평균 종사자수

(단위 : 명, %)

| 구 분              | '95            | '96               | '97               |
|------------------|----------------|-------------------|-------------------|
| 제 조 업<br>(증 감)   | 2,951,885<br>- | 2,897,675<br>-1.8 | 2,697,568<br>-6.9 |
| 식음료품제조업<br>(증 감) | 206,451<br>-   | 197,747<br>-4.2   | 186,623<br>-5.6   |

## 제조업 외국인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 분        | '96          | '97          | '98          | '99. 1~5   |
|------------|--------------|--------------|--------------|------------|
| 식 품        | 253          | 851          | 718          | 43         |
| 섬유·의류      | 21           | 85           | 18           | 27         |
| 제지목재       | 83           | 196          | 1,644        | 11         |
| 화 공        | 389          | 235          | 755          | 262        |
| 석유화학       | 215          | 3            | 0.8          | -          |
| 비 료        | -            | -            | 0.2          | -          |
| 의 약        | 32           | 44           | 134          | 33         |
| 요 업        | 47           | 54           | 279          | 41         |
| 금 속        | 13           | 14           | 7            | 66         |
| 기 계        | 159          | 166          | 587          | 140        |
| 전기·전자      | 436          | 291          | 1,377        | 247        |
| 운송용기기      | 271          | 395          | 180          | 85         |
| 기타제조업      | 12           | 16           | 33           | 6          |
| <b>합 계</b> | <b>1,980</b> | <b>2,348</b> | <b>5,734</b> | <b>961</b> |

### 2. 수질오염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의 증가로 상수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로 인한 지하수자원의 오염 및 고갈이 심화되고 있으나 청량음료가 생수 대체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여 수질오염을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청량음료는 국가의 수자원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상수도 물을 자체시설로 6회 이상 정수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3. 식생활문화의 창조

패스트푸드 등 새로운 식생활 문화의 확산 과정에

서 청량음료, 커피 등 식·음료품이 그 촉매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변화된 식생활 문화의 창조가 가능해졌고 전통적인 음식문화와 서구화된 음식문화의 융화를 가능케 했다.

## VI. 대체세수 확보방안

특별소비세 폐지 및 세율인하에 따른 대체세수 확보 방안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게 과세되고 있는 물품이나 분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고가사치품에 대한 과세강화로 수입대리석의 경우 전량 과세하고, 고급시계, 모피, 카펫 등은 현행 1백만원이상 과세에서 50만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석유류에 대한 주행세 강화, 마권 구입액에 대한 특별소비

세 과세신설(현행 경마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지방세로 전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품목의 죄악세(Sin Tax) 강화(주류(소주세율 인상), 담배 등) 등을 통하여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대체세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별 점」

### 두얼굴의 특별소비세

이번주 경제매거진 첫 번째 이야기로 특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설탕이나 콜라, 사이다 한병에도 어김없이 특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수입 대리석에는 붙지 않습니다. 또 고급시계, 모피제품, 카페트 등은 백만원만 넘지 않으면 특소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는 부자일수록 덜 내고 코흘리개를 포함한 시민들이 더 부담하는 특이한 세금이 돼 버렸습니다.

특별소비세가 서민고통세로 둔갑하고 있는 실상을 운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운영무 기자 :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늘 마시는 청량음료, 안들어 가는데 없는 설탕, 없는 집이 없는 TV,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청량음료입니다. 뚜껑마다 특별소비세를 냈다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이런 제품에까지도 이렇게 납세필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아이들은 자기가 콜라 한잔이나 사이다 한잔을 마실 때 특별소비세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캔콜라 한잔을 따라 마시면 37원의 특별소비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입농산물로 만든 이런 주스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수입농산물로 만든 이런 음료에까지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막의 모래언덕이 아닙니다.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입니다. 이 참고에는 최대 6만톤의 원당이 들어갑니다. 지금 원당의 톤당 가격은 28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억원어치의 원당이 쌓여있는 셈입니다. 이 가격의 10%인 20억원이 특별소비세로 붙습니다. 설탕은 우리 생활에 안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과자나 빵, 사탕 등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고, 음식을 조리하는데는 없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특별소비세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생활필수품에 특별소비세가 붙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세금을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정부는 지난 77년, 부유층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못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사치품에 세금을 붙이는 특별소비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당시 부유층만이 소비했던 설탕, 커피, 코코아, 청량음료, 냉장고, TV, 세탁기, 자동차, 도시가스, 휘발유, 그리고 화투와 트럼프, 골프용품 등 40여가지 품목이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특소세 과세대상의 대부분은 생활필수품화 됐습니다.

#### ◎ 김정일(관악구 봉천동) :

붙는거 있고 안붙는거 있고, 있다는건 알았는데 이런건 가정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이런 설탕에 붙는다는거

이런데도 정부가 특소세 과세대상품목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품에 부과해야 보다 많은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시는 500원짜리 콜라와 사이다에 붙는 특소세가 몇백만원짜리 수입 대리석과 같은 고

급 전자재에는 붙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백만원이 넘지 않는 고급시계, 모피제품, 카세트, 그리고 5백만원이하 고급가구 등은 특소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다 제품에는 예전에 그 뒷면에 특별소비세를 냈다고 해서 우표같은 납세용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납세증지가 사라지고 대신에 겉면에 납세증지 첨부 면제품이란 표시를 했습니다. 가전제품에서도 오디오, 일부회사의 청소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지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런제품들이 특소세의 과세대상 품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는 없습니다.

정부가 생활필수품에도 특별소비세를 붙인다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슬쩍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매일 특소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 여기 특소세가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 최경희(서초구 잠원동) :

모르겠는데요

- 그러면은 뭐가 있으면 알겠어요?

설명서를 다 여기다가 부착을 시켜놓으면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결국 시민들은 부유층도 아니면서 물건을 사는 순간 부유층처럼 특별소비세를 내온 것입니다.

◎ 박금정(마포구 도화동) :

없어야죠. 다같이 먹는건데 왜 붙여요. 저는 수입을 해온거기 때문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거다 그러면은 그런가보다 하지만 과자 종류에는 수입품은 별로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다 먹는건데 거기에 왜 특별소비세가 붙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 오재구(국세청 소비세과장) :

대체의 세목을 개발하기전에는 어떤 세목을 폐기하자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각종 수입 고가품 등 특별하게 세금을 붙일 품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품목을 개발하지 않고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편의주의 세무행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생활필수품에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특소세는 연간 3조원에 달합니다. 특별소비세는 서민의 고통세입니다

경제매거진 운영무입니다.

영상취재 이병구 / 영상편집 이우성

그동안 우리의 조세체제는 비단 앞서보신 특소세 문제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부담에서 오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 등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손쉬운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한 정부의 안이한 행정편의주의나 기득권층의 반발에 의해 개선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우리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제와 관행은 개혁돼야 합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의 확립은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